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상장법인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년 세제개편안 등
-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상호인정약정 발효
(관세청)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 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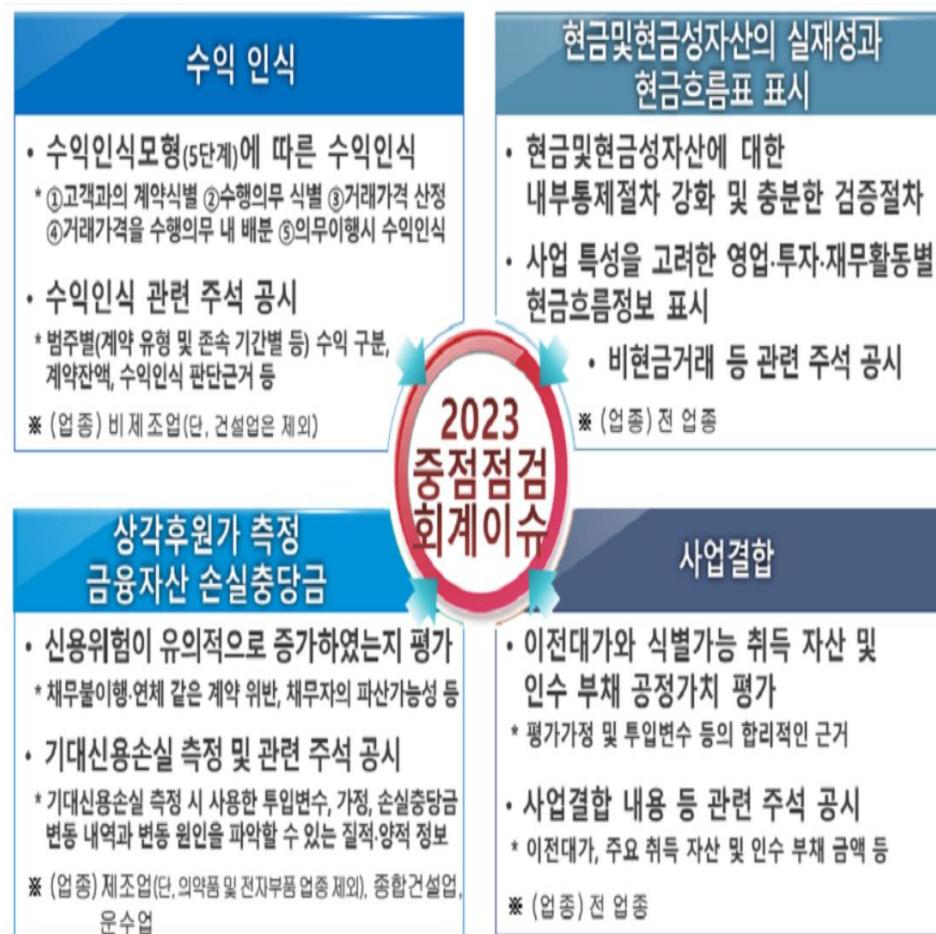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2022년 7월호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_상장법인

[출처: 금융감독원, 2022.06.27]

-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개요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사전 예고

-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3년 중에 회계오류 츄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회사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를 신중히 작성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Ⅱ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수익 인식

□ (선정배경)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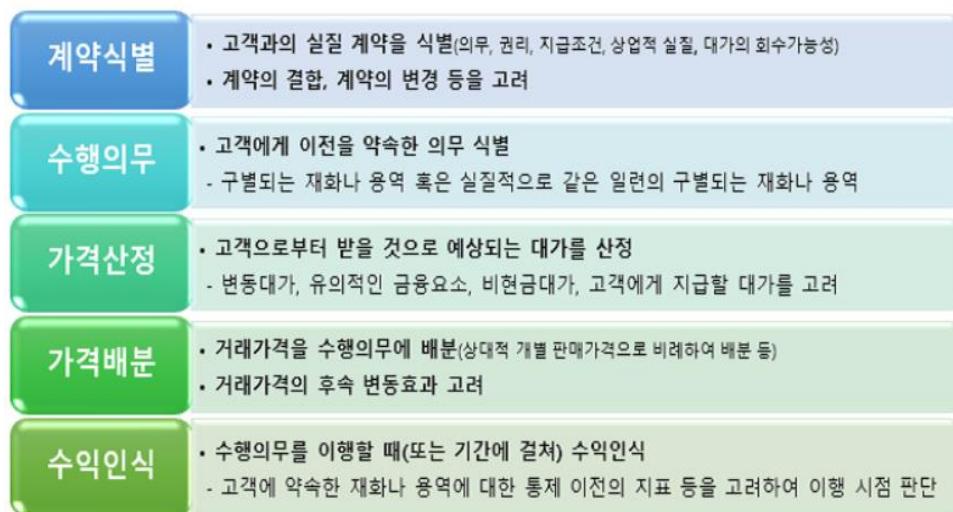
(대상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코드 중 **C00000**(제조업)과 **F00000**(건설업)
제외

-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건설업은 제외)의 수익 안식만 접겹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2022년 7월호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
수익인식모형(5 단계)
핵심원칙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②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① A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 수입육에 대해 ①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 ②A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③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A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A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
 - A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② B사는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 자사 플랫폼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20%) 쿠폰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B사는 해당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광고비)로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함
 - * 가격산정 시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은 고객에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

2022년 7월호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선정배경)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선정기준)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히 기재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 확인

②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❶ C사 자금팀장 OOO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승인 없이 무단 출금,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

-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

-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

❷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 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

2022년 7월호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선정배경)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 기대준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간 차이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

- (대상업종)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심사 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C21000 및 C26000 제외)	제조업(의약품 및 전자부품 제외)
F41000	종합건설업
H00000	운수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 (선정기준)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예시)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재무구조조정 가능성 등 높아지는 경우 등

- ②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

2022년 7월호

회계오류 예시

❶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甲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甲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 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❷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①완전자본잠식, ②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③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

- 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4. 사업결합

□ (선정배경)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 「'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공정위, '22.3.30.)에 따르면, '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248건) 및 66%(138조원) 증가

◦ 사업의 정의 층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선정기준)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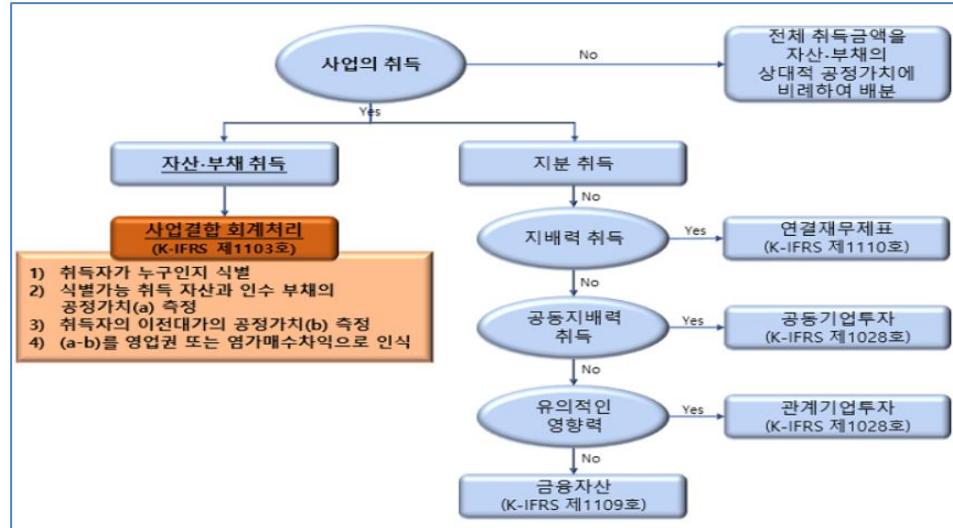
□ (유의사항) 사업의 정의 층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층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 사업의 구성요소인 ①투입물 ②과정 ③산출물 중 최소한 '투입물'과 '과정' 요소가 필요

②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주석 공시

2022년 7월호

사업결합 회계처리 여부 판단

회계오류 예시

①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 무형자산(고객관계)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 甲사는 고객관계만 양도하고 영업 인력 등은 철수시켜,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 중 '과정(예시: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을 미충족

-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 G사는 K-IFRS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을 적용

②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향후 계획
III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2022년 7월호

[붙임]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 내용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① 수익 인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모형(5단계)

- (1) 계약의 식별 : 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 가능성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합의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 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 가능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 (2) 수행의무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시 : 진행률 측정대상)
- (3)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
 -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공정가치 측정 원칙)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 (4) 거래가격의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 할인료(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
- (5) 수행의무이행
 - 한 시점에 이행
 -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
 -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
 - 기업 자체적 용도 없고,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2022년 7월호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히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호(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활동 구분

- 영업활동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제공 및 구입 등 주요 수익창출활동
- 투자활동은 유·무형 자산과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한 활동
- 재무활동은 지분상품 발행, 차입 및 상환 등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2022년 7월호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④ 사업결합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자 식별 → 취득일 결정 →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사업의 정의

-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
 - (1) 투입물 :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 (2) 과정 :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관례, 규칙
 - (3) 산출물 :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

-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 법인세,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2022년 7월호
붙임 2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2년)

대상회사 선정연도	중점점검 회계이슈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㉑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㉓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㉔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2022년	㉝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㉞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의 적정성 ㉟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㉟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

2022년 7월호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2022년 세제개편안 외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7.22 ~ 8.8), 차관회의(8.18), 국무회의(9.2)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2~200억원	20%	5~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 초과	25%		

*1. 하기 1) 및 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 적용 배제

1)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종과세 조정 합리화

- (이종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95% 익금불산입
*CFC Rule 배당간주,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2022년 7월호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형태(일반법인/지주회사) 및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일원화

지분율	의금불산입율
50% 이상	100%
30~50%	80%
30% 미만	30%

(*) 지주회사의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23년 및 '24년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60% → 80%로 확대 (중소기업 10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
- 수출목적의 국내거래에 대해 대기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개정안																				
①고용증대세액공제 (모든 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u>기본공제</u>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액(단위: 만원)</th> </tr> <tr> <th>중소(3년)</th> <th>중견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청년범위: 15~34세																				

2022년 7월호

현행	개정안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증소, 증견)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액(단위: 만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증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증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증소	증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증소	증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증소, 증견)	*주장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외국인근로자 특례 적용기간(5년)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대기업 적용 제외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구분	공제율(%)		
	대	증견	증소
일반	1	3 →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 6	12
국가전략기술	6 → 8	8	16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2022년 7월호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1조원 미만
 -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상향: 400억원/600억원/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40%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과세특례 한도 확대(100억원 → 최대 1,000억원), 본공제 확대(5억원 → 10억원) 및 20% 적용 과표구간 상향(30억원→6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대표이사 취임/유지기간 단축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5.1.1. 시행)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기타주주 합산 제외)
- 증권거래세 인하

	'22년	'23~'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 0.1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5.1.1. 시행)

2022년 7월호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만원)	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1,200	6%	~1,400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이하 생략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20만원)

- 식사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 2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0% 또는 12% → 12% 또는 15%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만 7세이상 → 만 8세이상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input type="checkbox"/>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6~10년	500만원+200만원 ×(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 ×(근속연수-20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5.12.31.까지)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무상기증 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2022년 7월호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적용기한 3년 연장('25.12.31.까지)
 -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확대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0.6% ~ 6.0% → 0.5% ~ 2.7%)
 - 세부담 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23년부터 적용)
 -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월별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1회 → 월별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24.7월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 확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50% → 100%) 확대

2022년 7월호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 목적('24년 시행)
 - (개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조정조세: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 *조정소득: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합계
 - *추가세액: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x 과세표준 (조정소득 -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급여액 합계액의 5%)
 -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첫 해는 18개월)

4. 납세자 진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 시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조정(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2022년 7월호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발효(관세청)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함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공),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2022년 7월호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서면국제세원 2021-7321, 2022.06.03)

(사실관계)

- 신청인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함
- 신청인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태국에 거주할 의사는 없으며, 한국에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등 납세의무 이행중.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태국 현지 해외영업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회신)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임..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

(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질의1] "이윤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1안>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2안>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

[질의2] 주식보유 기간 및 지분율 계산 시 "소유"의 범위

<1안> 중간단계 법인의 도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적 소유를 인정함.

<2안>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중간단계 법인(도관)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만 인정함

2022년 7월호

(회신)

[질의1]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사전법규재산 2021-1024, 2022. 7. 05.)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1.4.25.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생전에 2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기간 중 행사가 가능함.

구분	A법인	B법인
부여일	2018.03.26	2018.12.11
부여수량	15,000주	218,490주
행사기간	21.3.27 ~ 25.3.26	21.12.12 ~ 28.12.11
행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지급형 중 회사가 선택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022년 7월호

업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조직, 인사 전략 / HR▪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